# 등록무효(상)

[특허법원 2012. 6. 21. 2012허2494]



## 【전문】

## 【원 고】

【피 고】 경진식품 주식회사 (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외 1인)

【변론종결】2012. 5. 31.

### 【주문】

#### 1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【청구취지】특허심판원이 2012. 3. 2. 2011당23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
## [이유]

】1. 기초적 사실관계

가. 이 사건 등록상표

-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9. 5. 20./ 2011. 7. 27./ (등록번호 1 생략)(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)
- 2) 구성: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구이, 돼지고기구이, 소고기구이, 오리고기구이, 육포구이, 소시지구이, 오징 어구이, 조개구이, 새우구이, 가공된 생선구이.
- 4) 상표권자: 원고
  - 나. 비교대상상표
-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1999. 10. 18./ 2000. 12. 1./ (등록번호 2 생략)
- 2) 구성: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, 오리고기, 육포, 소시지, 오징어, 조개, 새우, 생선을 저민조각.
- 4) 상표권자: 소외 1

다.

이 사건 심결의 경위

- 2011. 9. 26. 피고 회사,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(2011당2332호). (이유: 이 사건 등록상표는, ①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·유사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거나, ② 비교대상상표를 모방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함.)
- 2012. 3. 2. 특허심판원,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함.

### [이유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11. 기초적 사실관계

가. 이 사건 등록상표

-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9. 5. 20./ 2011. 7. 27./ (등록번호 1 생략)(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)
- 2) 구성: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구이, 돼지고기구이, 소고기구이, 오리고기구이, 육포구이, 소시지구이, 오징어구이, 조개구이, 새우구이, 가공된 생선구이.
- 4) 상표권자: 원고
  - 나. 비교대상상표
-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1999. 10. 18./ 2000. 12. 1./ (등록번호 2 생략)
- 2) 구성: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, 오리고기, 육포, 소시지, 오징어, 조개, 새우, 생선을 저민 조각.
- 4) 상표권자: 소외 1

다.

이 사건 심결의 경위

- 2011. 9. 26. 피고 회사,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(2011당2332호). (이유: 이 사건 등록상표는, ①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·유사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거나, ② 비교대상상표를 모방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함.)
- 2012. 3. 2. 특허심판원,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함.

#### [이유]

】1. 기초적 사실관계

가. 이 사건 등록상표

-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2009. 5. 20./ 2011. 7. 27./ (등록번호 1 생략)(대법원판결의 등록번호 생략)
- 2) 구성: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구이, 돼지고기구이, 소고기구이, 오리고기구이, 육포구이, 소시지구이, 오징 어구이, 조개구이, 새우구이, 가공된 생선구이.
- 4) 상표권자: 원고
  - 나. 비교대상상표
- 1) 출원일/ 등록일/ 등록번호: 1999. 10. 18./ 2000. 12. 1./ (등록번호 2 생략)
- 2) 구성:
- 3) 지정상품: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닭고기, 돼지고기, 소고기, 오리고기, 육포, 소시지, 오징어, 조개, 새우, 생선을 저민 조각.

4) 상표권자: 소외 1

다.

이 사건 심결의 경위

- 2011. 9. 26. 피고 회사,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(2011당2332호). (이유: 이 사건 등록상표는, ①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·유사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거나, ② 비교대상상표를 모방한 것으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함.)
- 2012. 3. 2. 특허심판원,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함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